

전주지방법원 2017. 2. 3 선고 2016가단140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17. 1. 6.

판결 선고2017. 2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하천 6m²에 관하여 1997. 4. 27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8,970,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1977. 4. 26. 소외 D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E 답 679㎡를 매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77. 5. 3. 접수 제135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점유, 사용하였다.

나. 원고는 당시 위 토지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C 하천 542㎡도 점유, 사용하였다.

다. 당시 전북 완주군 C 하천 542㎡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망 F로 되어 있었으나, 위 F는 1974. 4. 14.경 이미 사망하였다.

라. 전북 완주군 C 하천 542㎡는 2016. 4. 22. 전북 완주군 C 하천 6㎡와 전북 완주군 G 하천 536㎡로 분할되었다.

마. 피고는 전북 완주군 C 하천 6㎡와 전북 완주군 G 하천 536㎡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. 5. 3. 접수 제48022호로 1974. 4. 14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바. 소외 전라북도(이하 전라북도)는 전북 완주군 G 하천 536㎡에 관하여 2016. 5. 19. 피고에게 28,970,800원을 지방도 편입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, 2016. 5. 19.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53732호로 2016. 5. 19.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내지 영상, 전라북도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

원고가 1977. 4. 27.경부터 전북 완주군 C 하천 6㎡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, 공연히 점유,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1977. 4. 27.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히 점유를 개시하였고, 점유 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. 4. 27.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7. 4. 27.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.

3. 금전청구 부분

가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는 1977. 4. 27.경부터 전북 완주군 G 하천 536㎡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, 공연히

점유, 사용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도 1997. 4. 27.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, 위 부동산이 전라북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, 원고는 원고의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근거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, 피고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 28,970,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무릇,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,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,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4다43825 판결 등 참조).

둘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, 설령 원고가 전북 완주군 G 하천 536m²에 대하여도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, 전라북도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, 소외 전라북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기 전에 원고가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근거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다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로서는 위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(또한 원고는 2016. 1. 15. 망 F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의 2016. 5. 19.자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2016. 5. 24.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, 원고가 2016. 1. 15. 망 F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2016. 5. 19.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

주장도 이유 없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용균